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3. 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7. 19.

기획행정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기획조정실)
- 제출일자: 2023. 7. 7.(금)
- 회부일자: 2023. 7. 7.(금)
- 검토기간: 2023. 7. 7.(금) ~ 7. 13.(목)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용어 표기 반영 등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재해·재난 피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역할을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변경 (안 제명)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표기 변경(안 전반)
- 중복내용 정비(안 제5조)
- 재해구호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행정규제 심사: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입법예고(2023. 6. 12. ~ 7. 3.) 결과: 의견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른 용어 표기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로 하고,
 - 안 제2조에서 “교류협력” 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 안 제2조에서 제13조까지에서 “자매결연” 을 “친선결연” 등으로 표기를 변경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 재해·재난 지역에 재난구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교류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이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장 지방의회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 제1항 제10호의 교류·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으로 한다.

【 현행 조례 】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우호교류 확대를 통한 교류의 내실화와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21.)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단체 및 도시”라 한다)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결연 및 교류”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결연 및 교류 대상) 결연 및 교류 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단체 및 도시”로 한다. (개정 2020. 2. 21.)

제5조(결연 및 교류 제의)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체 및 도시에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단체 및 도시의 자료를 수집하여 결연 및 우호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상도시를 선정한다.

② 대상도시 선정 시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검토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미래 지향적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결연 및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단체 및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단체 및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구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위한 제반사항의 비교견학과 단체 및 도시의 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 등 필요한 교류를 할 수 있다.

제7조(자매결연 체결 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0. 2. 21.)

제8조(결연 및 교류 협약 체결) ① 결연 및 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단체 및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단체 및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제9조(동행정복지센터의 자매결연 등) (개정 2016. 10. 4, 2017. 8. 21)

① 동행정복지센터의 장은 국내 타도시의 기관과 결연 및 교류 등을 추진할 때에는 국내 도시의 읍·면·동과 우선 추진한다.

② 동행정복지센터의 장은 2년마다 교류활성화 및 실익의 정도 등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매결연의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국내 도시의 읍·면·동과 자매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상대도시에 대한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류사업 촉진) ① 구청장은 결연 및 교류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주민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0. 2. 21.)

② 구청장은 결연 및 교류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예산의 지원
2. 필요한 시설의 사용
3. 교통편의의 제공 등

③ 구청장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 주민이 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에 거주하는 자에 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제11조(민간 교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차원에 대한 교류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급 기관, 사회단체, 경제인 등이 결연 및 교류도시의 기관, 사회단체, 경제인 등을 초청, 교류추진 시 가능한 범위에서 회의장소 등 시설 이용 및 교통편의 지원

2. 각급 학교에서 결연 및 교류도시의 학생들을 초청할 경우 시설관람 안내 및 교통편의 지원

② 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문화·경제·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민간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1.)

제12조(자매결연 취소)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인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1.)

제13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활동을 강화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협정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